



TaxNewsFlash - Transfer Pricing

[Website](#) | [Archive](#) | [Contact](#)

Transfer Pricing Newsletter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TP)는 글로벌 이전가격 이슈를 공유하고자 KPMG 에서 발간되는 TaxNewsFlash 발간물 및 Bloomberg 에서 발간되는 BNA Report 를 한국어로 요약하여 월 2회 제공합니다. 밑줄 친 제목을 클릭하시면 원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reland Extends Deadline for Company Tax, Profit Reporting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6 pg. 19\)](#)

아일랜드: 국가별보고서 제출기한 연장

아일랜드 과세당국은 2018 년 2 월 말까지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의 첫 번째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제출기한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일랜드 과세당국에 따르면 이러한 제출기한의 연장은 국가별보고서 제출시스템과 관련된 전산상 시스템 구축 과정에서 일부 지연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며 제출기한의 연장으로 대규모 다국적 기업들이 기한 내에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하고 보고의무를 이행 할 수 있을 것 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아일랜드는 국가별보고서와 관련하여 OECD 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년도 연결매출액이 7 억 5 천만 유로(약 8 억 9270 만 달러) 이상인 다국적 기업은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아일랜드에서 세무행정에 대한 투명성 제고 및 국가 간 정보교환을 목표로 한 국가별보고서는 OECD 의 BEPS 세부과제 13(Action 13)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탈세방지를 위한 지침(Anti-Tax Avoidance Directive)의 일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한편 2016 년 1 월 1 일부로 발효 된 아일랜드의 국가별보고서 요구사항에 따라 대규모 다국적 그룹들은 수익, 이익, 납부세액(현금 및

삼정 KPMG 이전가격본부
26 December 2017

KEY CONTACTS

[강길원 전무이사\(본부장\)](#)

(Tel: 02-2112-0907)

[김상훈 상무이사](#)

(Tel: 02-2112-7939)

[백승목 상무이사](#)

(Tel: 02-2112-0982)

발생주의), 종업원수 및 기타 국가별 데이터를 과세당국에 제출해야 합니다.

아일랜드 국가별보고서에 포함해야 하는 기타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a) 각 조세관할권별 소득, 세금 및 사업 활동의 배분 내역:

- 수익(비특수관계자, 특수관계자, 합계)
- 세전이익
- 납부세액(발생주의)
- 납부세액(현금주의)
- 법정자본금
- 유보이익
- 종업원수
- 현금 및 현금등가물을 제외한 유형자산

(b) 각 조세관할권별 다국적 그룹의 관계 회사 정보(고유번호 및 사업활동 등)

Taiwan Sets Threshold for New Transfer Pricing Reporting Rule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6 pg. 22)

대만: 새로운 이전가격보고 규정에 대한 금액요건 확정

대만은 12월 11일 납세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이전가격 문서화 관련 기준규정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8년 법인소득세 신고 분부터 납세자(해외법인의 대만지점)의 연간 매출액이 30억 TWD(1억 USD)를 초과하고 연간 국외특수관계자와의 거래금액이 15억 TWD 를 초과하는 경우 이전가격 정책을 문서화한 통합기업보고서(Master File)을 제출해야 합니다. 위 규정은 (1) 개별기업보고서, (2) 통합기업보고서, (3) 국가별보고서를 포함하는 OECD 세부지침 13(Action 13)의 이전가격 문서화를 위한 3단계 방식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대만에서 사업활동을 영위하는 다국적 기업들이 법인소득세 신고 시 개별기업보고서 또는 이전가격문서화 보고서에 대한 구비 의무만 있었지만, 새로운 규정의 도입으로 2018년부터 약 500개의 법인납세자가 통합기업보고서를, 약 160여개의 대만 주요 기업들이 국가별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통합기업보고서 요건(Master File Requirements)

그룹의 투명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되는 통합기업보고서는 작성비용이 높아 대만의 많은 중소기업들이 과도한 법규준수 비용에 따른 부담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통합기업보고서 제출에 대한 금액기준이 필요하며,

대만의 금액기준은 국내 통합기업보고서 작성의무 관련 금액기준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가별보고서(Country-by-Country Report)

국가별보고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대만은 OECD의 최소 금액요건인 연간 연결매출액 7억 5천만 EUR(8억 8,150만 USD)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출액이 현지통화로 약 270억 TWD를 초과하는 대만에 소재하는 다국적 기업의 최상위 모기업은 국가별보고서 제출대상에 포함됩니다. 현지 조세전문가에 따르면 조세회피 계획을 적발하고 기업이 합리적인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각 관할지역 세무당국의 공동노력이 될 것이라며 이에 맞춰 대만 또한 국제 트렌드에 맞는 조세관련 규정을 정립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India Expands Tax Treaty Relief for Multinational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6 pg. 24\)](#)

인도: 다국적 기업들에 대한 조세경감 확대

인도의 중앙직접세위원회(Central Board of Direct Taxes, "CBDT")는 11월 27일 발표문에서 이전가격 사안에 대한 상호합의 규정(OECD 모델 조세조약 조항인 제9조 2항)을 신설함으로써 국가간 조세조약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 국적 기업들의 이전가격사전합의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OECD 모델 조세조약 제9조 2항은 과세된 금액에 대하여 상대국이 적절한 이전가격 대응조정을 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 따라 과거 인도와의 조세조약 상 제9조 2항을 적용하지 않는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와 대한민국은 쌍방 APA 및 MAP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가격 사전합의는 회사와 하나 이상의 과세당국이 일정기간 동안 정상가격산출방법 및 적용에 대한 합의점을 도출하여 선정하며 조세분쟁을 예방하고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상 특정 문제에 대하여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창구역할을 하며 조세조약 협정국가들 간의 합의과정을 포함합니다.

KPMG 인도의 이전가격본부 대표는 인도의 중앙직접세위원회의 위와 같은 규정 변경은 기존 상호합의절차 및 사전승인절차가 불가능했던 5개 국가에 속한 다국적 기업들의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인도 내 다국적 기업의 진출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고 평가했습니다.

[Silicon Valley Wants Clarity on Permanent Establishments](#) (Bloomberg TP Report vol. 26, no. 16 pg. 15)

미국: 고정사업장 관련 명확한 기준정립의 필요성 대두

다국적 기업과 고정사업장 간 소득이전에 대하여 OECD 지침에서 명시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특히 다국적 기업들이 다수 상주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에서 이중과세 문제를 방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6월 OECD 가 새로 발행한 소득이전 관련 논의 초안(Discussion Draft)는 적절한 분석이 부족하며, 특히 고정사업장에게 귀속 가능한 이익 산출 시 사용해야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애매하고 불분명한 문장을 포함한다고 평가됩니다.

OECD 의 BEPS 과제(Action Plan): 산호세 주립대학교의 한 세무전문가는 기존 글로벌 세무규정을 전반적으로 재정립한 OECD 의 BEPS 과제는 국가 간 소득이전 및 세원잠식 방지라는 본래의 목적에도 이중과세 및 기타 다른 조세 관련 이슈에 대한 우려 및 조세에 대한 불확실성을 오히려 증가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인적기능(Significant People Function): OECD 규정에서는 고정사업장에 대한 소득 귀속문제에 있어 '중요한 인적기능' 개념을 적용합니다. 하지만, 현지 조세전문가에 의하면 해당 규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명확성이 현재로서는 상당히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약 및 법률(Treaties, Laws required): 미국세청(IRS)의 이전가격 사전합의 및 상호합의 책임자는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과 과제들 자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지 않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며, 법적 구속력은 관련 내국법 또는 조세조약에 의해 부여된다고 밝혔습니다.

상호합의절차(MAP) 증가: KPMG US 의 이전가격 분쟁처리 글로벌 대표에 의하면 국제 이중과세 해소를 위한 상호합의의 신청 건수는 지난 십년간 두배나 증가했습니다. 또한, BEPS 도입 전에도 전세계적으로 이전가격과 관련하여 논란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으며, 다국적 기업들은 새로운 이전가격 관련 규정의 시행으로 이중과세 문제점은 더욱 증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Back to top](#)

[Privacy](#) | [Legal](#)

INTERNAL USE ONLY

27th Floor, Gangnam Finance Center, 152, Teheran-ro, Gangnam-gu, Seoul, Korea

kpmg.com/socialmedia



© 2017 Samjong KPMG ERI Inc., the Korea member firm of the KPMG network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Cooperative("KPMG International"), a Swiss entity. All rights reserved.

kpmg.com/app

